

포르투갈 「출판법」 (하)

이번호는 지난호에 이어 포르투갈의 2개 언론관계법 중 출판법의 나머지 부분을 게재합니다. 이 출판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최영수 교수께서 번역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제 30 조(불복종 죄의 성립)

1. 다음 규정은 불복종죄에 해당된다.
 - a) 사법적으로 압수 혹은 정지된 정기간행물의 출판
 - b) 제 53 조의 1 항에 따른 반론문 게재를 명한 법원의 결정과 제 16 조 7 항의 규정을 편집위원회와 정기간행물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c) 제 54 조 규정의 결정사항을 공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전항 a)호의 경우 군, 경, 행정당국은 사법적으로 정지, 압수 혹은 압수 명령을 받은 출판물을 48 시간 내에 관할 사법당국에 통보함과 아울러 압수할 수 있다.
3. 제 1 항 b)호의 경우 편집장이나 편집위원회의 위원들이 그 결정에 참석하지 않거나 전적으로 그 결정에 찬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
4. 본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동안 사법적으로 발행정지처분상태에 있는 정기간행물을 발간했을 경우 해당 발행사(proprietary enterprise)에 대해 부수당 100,000escudos 이상 500,000escudos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광고료와 총 인쇄부수의 판매가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발행사가 서면으로 출판에 대해 반대했을 경우는, 벌금은 위만한 작가에게 부과된다.

제 31 조 (불법출판물)

1. 불법출판물이란 의도적으로 다음 사항을 게재하지 않는 출판물을 의미한다.
 - a. 만행본의 경우 저자와 발행인.
 - b. 정기간행물의 경우 간행물명, 소유주, 발행지명
2. 불법출판물을 계속적으로 편집, 구성, 인쇄, 배포 및 판매할 경우에는 200,000escudos 이상 500,000escudos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3. 전조에 규정된 사항들을 의도적으로 는 위반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000escudos 이상 500,000escudos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계속될 경우에는 500,000escudos 이상 1,000,000escudos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4. 군, 경, 행정당국은 불법출판물을 48 시간 이내에 관할 사법당국에 통보함과 아울러 압수할 수 있다.

제 32 조 (외국출판물의 배포정지)

1. 포르투갈 형법에 의거하여 범죄를 자극하는 글이나 그림을 담고 있는 외국 출판물의 배포는 법원에 의해 정지될 수 있다.

2. 출판물의 내용이 공공질서에 위배되거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혹은 계속해서 범법행위를 자극, 유발하는 경우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사전에 압수할 수 있다
3. 제 1 항 규정에 대한 결정은 리스본 지방법원 이 관장한다.

제 33 조 (처벌규정)

1. 본 법령에 위반될 경우 50,000escudos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반복될 경우 20,000escudos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
2. 제 3 조 제 4 항, 제 7 조 제 10 항, 제 15 조 제 1 항, 제 16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000escudos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 34 조(벌금 및 배상금 지불)

1. 출판자유남용의 행위자로 선고된 자들에게 부과된 벌금이나 배상금 지불은 행위자와 아울러 해당 발행사도 책임을 진다.
2. 범죄행위자가 지불할 경우, 해당 발행사는 면제된다.
3. 벌금액은 전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며, 유죄판결의 통보와 공포일로부터 48 시간 이내에 국고에 수납되어야 한다.
4. 1 심에서 출판자유남용죄의 행위자로 선고받은 자가 재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을 경우 배상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35 조 (출판자유 침해)

1. 본 법령에 규정된 출판의 권리, 자유, 혹은 보장을 침해한 자는 500,000escudos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대한 책임은 신문사에 771 천 피해에 대한 책임도 아울러 진다.
3. 침해한 자가 국가나 공공단체의 인물일 경우 역시 직권남용죄에 처하고 국가나 단체는 제 1 항에 규정된 벌금의 지불에 대해서 침해한 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

제 4 장 재판 수속

제 36 조(보조법규)

1. 출판법 위반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본 법령의 규정 외에는 형사소송법과 보충법령에 따라 행해진다.
2. 약식기소로는 출판법 위반죄를 판결할 수 없다.

제 37 조 (지역관할)

1. 출판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출판업체의 본부 관할 법원이 관장한다.
2. 출판업이 개인소유일 경우는 소유인 거주지 관할 법원이 관장한다.
3. 수입 외국출판물에 대해서는 수입단체의 본부나 거주지 혹은 포르투갈내의 대표기관에 대한 관할 법원이 관장한다.

4. 전항의 규정에서 관할권 자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불법출판물은 사고지역 관할 법원이 관장한다.
5.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피해자 관할 법원이 관장한다

제 38 조 (고발)

(폐지)

제 39 조 (예심)

(폐지)

제 40 조 (잠정고발)

1. 예심이 완료되었을 때 경사는 사적 범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 34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3 일 이내에 고발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보좌인은 예심종결 통보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고발을 할 수 있다.
3. 고발은 사안별로 나뉘어져야 하고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합법적인 형식과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4. 사적인 사안에 대한 고발은 인지론 붙이고 날인한 서류의 사본을 피의자 수만큼, 첨부해야 한다.

제 41 조 (반대진술심리)

1. 검찰청 대리인, 보좌인, 혹은 피의자가수사의 명확성을 위해 요청할 때마다 반대진술심리가 열릴 수 있다.
2. 반대진술심리는 판사가 보다 정확하고 충분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수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는 항상 열릴 수 있다.
3. 반대진술심리는 모든 피의자들이 증언 답변한 날로부터 40 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4. 지의 자가 구급되었을 경우 항에 명시된 기간은 30 일이 된다.

제 42 조 (항의)

1. 형사소송법 제 352 조 규정에 의한 출석통보나 반대진술심리의 청원이나 반대진술심리법정이 개정되면, 피의자는 반대진술심리의 종결이 있는 후 이의신청에서 자신의 모든 변호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시에 언급되지 않은 문제들은 심의와 판결, 심리에서 참작되지 않는다.
2. 이의 신청은 사안별로 나누어져야 하고 사실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합법적인 형식 및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3.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 제 352 조에 규정된 통보일 혹은 반대진술심리 개최를 규정한 법령일로부터 8 일 안에 행해진다.
4. 이의신청에는 사안 고발자 수대로 철인되지 않은 서류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 43 조(사실규명에 대한 증거)

(폐지)

제 44 조 (반대진술심리 종결)

1. 반대진술심리가 완결되면 제출된 증거에 따라 고발사항의 계속 여부를 정사와 그 보좌인에게 통보한다.
2. 전항에 기술된 통보는 3일 이내에 행해진다.
3. 관사가 반대진술심리의 종결을 선언한 후 변호인과 당사자에 대한 출석 통보는 반대진술심리에 대한 최후 조사가 끝난 직후 행해질 수도 있다.

제 45 조 (최종고발)

1. 고발은 제 40 조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에 따른다
2. 피의자와 그 변호인은 고발 사본을 접수함과 아울러 고발에 대한 통보를 받고 3일 이내에 최종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3. 검사나 그 보좌인이 잠정고발 사항에 대해 전혀 변경할 사항이 없다고 진술할 경우 통보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최초의 이의신청을 보완함과 아울러 모든 증거에 대해 최종 입장을 취할 권리를 항상 갖는다.

제 46 조(유죄 판결문)

1. 유죄판결 혹은 무죄판결은 5일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 366 조의 규정에 따라 선고되며 검사에게는 24시간 이내에, 당사자에게는 3일 이내에 통보된다
2. 당사자는 통보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참고인(증인) 명부를 제출할 수 있다
3. 같은 기간내에 당사자와 정사는 본조 제 1 항에 규정된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4. 항소인이 자신의 항소에 대한 변론을 위해서 법률적이며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기 원할 경우 앞 조항의 등보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 47 조(증거)

1. 예심에서 피해자는 각 위법사항에 대해 5인 이상의 증인을 신청할 수 없으며, 피의자가자신의 진실 규명을 원할 때도 각 위반 사항에 대해 5인 이상의 증인을 신청할 수 없다
- 2 이미 채택된 증인 외에 반대진술심리에서는 각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자는 3인 이상의증인을 신청할 수 없으며, 피의자는 5인 이상의 증인을 신청할 수 없다
3. 공적 문제에 대한 심의와 판결소송심리에서는 소송심리에서 이미 채택된 증인 외에 3인이상의 증인을 신청할 수 없다
- 4 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고발은 전항과 같은 조건하에서 2인 이상의 증인을 신청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조건하에서 판결심문에서 5인 이상의 증인을 신청할 수 없다.

제 48 조(심의와 판결 심리)

1. 심의와 판결 심리는 판사가 형사소송법제 443 조에 부합되는 권한을 사용할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실행되면서 유죄판결의 처리에 이어지는 20일 동안에

행해진다 2. 심의와 판결의 심리 일정은 제 46 조 제 4 항에 규정된 서류 제출을 위한 시간이 불가피할 경우 연기될 수 있다. 3, 심의와 판결 심리의 비밀사항은 판결 날짜가 지정된 공문(dispatch)에서 결정 지워질 수 있다. 4 명예훼손, 비방, 무고의 경우에는 단지심문에 채택된 사람들만이 참석할 수 있다.

제 49 조(항소)

(폐지)

제 50 조 (압수)

1. 출판으로 인해 야기된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만이 고발된 출판물을 압수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소송에 대한 사전행위, 혹은 부수적 행위로서 그 출판물의유포를 제한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결정할 수 있다.
2. 법원은 어떠한 고소인이나 검사의 청원에 대해 고발된 저작물이나 그림 등의 출판물의잠정 압수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출판물의 유포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전항들에 기술된 압수나 기타 조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에 근거 한다.
4.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판사는 그 조치의 인가, 혹은 취소를 결정하기 위하여 증거수집을 진행시킬 수 있다.
5. 수사 청구자가 나쁜 의도로 청구하였을 경우는 그로 인해 야기될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법원에 고시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 51 조 (위법)

본 법령의 규정 외에 제 33 조의 규정 위반은 2월 17일자 법령 78/87의 제 3 조와 보충법령에 의거해 소송이 제기된다.

제 52 조 (소송의 신속성)

1. 출판법 위반죄에 대한 소송은 구금된 피의자가 없더라도 긴급성을 갖는다.
2. 출판법 위반죄에 대한 소송은 그 긴급성에 의해 법률이나 관할 당국이 그 기간을 결정했을 때는 명령, 공문 송부(dispatch) 수사진행에 상관없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기간보다 절반 단축된 기간내에 이루어 진다
3. 그러나 청원이 있을 경우 심문(judicialinquiry)을 위한 기간은 두 달이며 심리(instruction)를 위한 기간은 한달이다.

제 53 조(반론권에 대한 사법적 처리)

1. 반론권의 행사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또는 근거없이 거절당했을 경우 당사자는 제 33 조에 규정된 경범죄를 판정하는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은 그 판결이나 반론의 본문을 그 판결이 관할 법원에 계류된 날로부터 제 16 조 제 2 항에 명시된 기간이내에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2. 반론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결정을 만족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기간행물의 편집장은 2일 이내에 그 결정과 동일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 후 같은 기간내에 판결이 선고될 것이며 이 선고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다.
3. 최초의 청구와 이의제기를 합친 모든 서류를 포함하는, 단지 서류 심사만이 허용된다.

제 54 조 (법원판결의 공표)

1. 정기간행물의 출판법 위반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났을 경우, 해당 정기간행물은 무료로 판결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입증된 사실과 피해자와 유죄판결 받은 자의 신원, 적용된 처벌규정 및 확정된 배상금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해당 정기간행물이 판결의 게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은 해당지역에 다른 정기간행물이 없을 경우 그 지역, 혹은 최 인근지역의 최대 발행부수를 가진 정기간행물들 중한 정기간행물에 책임자의 부담으로 공표, 출판된다.

제 5 장 임시규정과 최종규정

제 55 조(정보출판물에 대한 규정)

1. 정보물로 간주되는 정기간행물의 출판은 제 3 조 제 4 항에 언급된 편집규정을 본 법령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공표해야 한다
2. 전항에 규정된 정보물의 분류는 신문평의회에 의해 인가를 받지 않는 동안에는 임시적인 출판물로 간주한다.
3. 신문평의회에 의해 정보물로 분류된 정기간행물의 출판은 그러한 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편집규정을 공표해야 한다.

제 56 조(기업의 자유)

1. 제 7 조 제 8 항에 기록된 자본의 국유화의 필요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문 방송사들은 현재까지 발전시 켜온 활동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2. 새로운 정기 간행물을 취득, 혹은 창간하거나, 사회자본을 증가시킬 경우, 다른 신문방송사들의 동업자가 될 경우, 혹은 현저하게 활동사업을 확장할 경우에는 신문평의회에 선언에 의거해 30 일 이내에 제 7 조 제 7 항 규정에 순응해야 한다.
3. 본 법령의 효력 발생일에 제 7 조 제 10 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주식회사는 그 필요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4 개월의 기간을 갖는다.

제 57 조(취득권)

제 7 조 제 11 항, 제 18 조 제 1,2 항 및 제 20 조 제 2 항의 규정은 본 법령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신문 방송사의 이사, 경영자 혹은 정기간행물의 편집장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58 조(인권과 정치권의 정지)

본 법령에 규정된 인권과 정치활동의 보장에 대한 필요조건은 1974년 4월 25일 이전에 정치범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59 조 (독점방지 법령)

제 8 조 제 2 항의 규정은 본 법령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정부가 공포한다.

제 60 조(공공자본기업에 대한 규정)

제 9 조의 신문사에 대한 규정은 본 법령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변경될 수 있다.

제 61 조(신문기자에 대한 규정과 윤리법안)

1. 본 법령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제 10 조 제 3 항에 규정된 윤리강령은 신문기자노동조합에서 관장, 입안한다
2. 신문기자 노동조합은 신문기자에 대한 규정계획을 입안하여 본 법령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 62 조(신문기자에 대한 교육)

정부는 본 법령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제 10 조 제 5 항 규정의 실행을 위해 각법령의 효력과 실시와 아울러 신문기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63 조 (납본)

1. 정부는 본 법령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납본에 관한 규정을 공포해야 하며, 1 규정에서 발송의무로서 각 수취단체에 보낼 출판물의 부수의 습자와 출판물이 어떻게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는지의 방법 및 대책 등이 명확히 결정되어야 한다.
2. 송달의 의무는 각 출판물 한 부를 송달함으로써 이행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문제에 관한 현행 규정은 계속 효력을 발생한다.
3. 제 1 항의 규정은 공공 출판물에도 역시 적용될 수 있다.

제 64 조 (출판물 등록)

본 법령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제 13 조 규정에 따라 출판물 등록업무에 관한 규정이 정해지며 본 법령의 규정외에는 5월 26일자 제 303/72 포고령의 효력일까지 계속된다.

제 65 조 (신문평의회)

1. 신문평의회는 본 법령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제 17 조 제 3 항에 언급된 규정을정해야 한다.
2. 본 법령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제 17 조 제 5 항 d)호에 언급된 규정을 정해야한다.

3. 제 17 조 제 5 항 9)호에 언급된 정기간행물분류는 본 법령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

4. 1974 년에 관한 신문평의회의 보고서는 올해 6 월 30 일까지 공표되어야 한다.

제 66 조 (기타 위법 사항)

1.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총동 및 조장하는 내용을 담은 그 어떠한 시청각의 방법이나 수단, 혹은 출판물, 필사, 그림, 그리고 출판물과 전단, 통지, 고시, 프로그램을 선전하거나 판매하는 것과, 벽이나 다른 공공장소에 부착하거나 전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a) 민주적인 제도에 반하거나 민주질서를 위협하는 모욕적, 공격적 및 기타 다른 불법적 침해

b)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및 위협.

c) 군의 행동과 정치적 행사에 관한 모욕적, 공격적 및 기타 다른 불법적 침해.

d) 군 합참의장의 허가 없이 군사작전, 특히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군사기밀을 침해하는 언급과 그 유포.

e) 직, 간접적으로 군의 기율과 단결, 그리고 직분 수행을 위협으로 몰아넣는 언급

f) 출판물의 내용이 심각한 소요나 피해를 야기한다고 인정되거나, 공공질서의 유지와 복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사실.

g) 민심을 오도하는 허위 날조된 모든 유언비어나 정보 및 형 법 제 159, 160, 420, 483 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것.

2. 보상할 수 없는 피해나 소요를 야기한다고 인정된, 전항에 언급된 행위들의 사실은 법의 일반적 범위내에서 제소된다.

3.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기업, 협회, 조직 및 정당은 20,000escudos 이상 500,000escudos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계속할 경우에는 벌금의 액수는 배가된다.

4. 침해사례가 정기간행물에 의해 행해졌을 경우 해당 정기간행물은 3 호에서 30 호까지 정간되며, 침해사례가 반복될 경우에는 일간 출판물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6 호에서 60 호 또는 180 호까지 정간될 수 있다.

5.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일반법에 의해 중형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최고 징역 2 년 형과 벌금형에 처하며 위반이 반복될 경우 징역형은 벌금형으로 대체될 수 없다.

제 67 조(관할 법원과 통지의 의무)

1. 전항에 언급된 제재조치는 검사나 그 보좌인의 기소에 따라 지역 관할 법원이 판결하며, 어떠한 공, 사 단체도 고발할 수 있다.

2. 어떠한 행정기관, 군, 경찰당국도 본조에 규정된 불법행위에 대해 인지함과 동시에 검사, 보좌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소송의 예심에 필요한 증거물 수집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가장 빠른 통로를 통해 담당 검사, 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증거물을 인계할 의무도 있다.

제 68 조(소송의 본질)

1. 제 52 조의 규정은 제 66 조 규정의 범법 행위에 해당되는 소송에 적용된다.

2. 헌 제 5 항의 원문

제 69 조(군사법원)

제 36 조 제 1 항 규정은 군사법원의 직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 70 조(출판활동과 단행본)

1. 정부는 작가, 편집인, 서적상인, 인쇄인 및 관련단체 등의 대표가 참가하는 출판활동과 단행본에 관한 규정의 설정을 장려한다.
2. 전 항에서의 규정은 필요할 경우 다큐멘터리, 보도, 뉴스 등의 형태로 논평하거나, 법령에 규정된 출판물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는, TV, 라디오 매체에도 적용된다
3. 제 1 항에 언급된 전문단체는 필요할 경우 제 10 조와 제 61 조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윤리법안과 전문 규정 계획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법안과 규정은 작가나 단행본 편집의 자유의 범주에의 접근을 결코 제한할 수 없다.

제 71 조 (국제협력)

정부는 출판의 자유의 촉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단체에 포르투갈 출판인들의 참석을 장려하며 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협회의의 거행이나 가입 등으로 그 협력을 강화한다.

제 72 조

본 법령은 공포 15 일 후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효력발생 후부터 6 月 25 일자 법령 281/74 에 의해 설정된 출판에 관한 직권은 정지된다.